

『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5월 7일

나. 발 의 자

장세만 의원, 김영호 의원, 김태근 의원, 김도문 의원
김익수 의원, 권기만 의원, 박교상 의원, 박순이 의원
석호진 의원, 임춘구 의원, 한정우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5월 19일

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장세만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근거리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것이며,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시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(안 제3조 내지 제5조)
-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추진과 관련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·제7조)
- 시민자전거의 운영 및 자전거타기 시범지역·기관, 자전거 이용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역과 시범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2조 내지 제14조)
-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5조·제16조)
- 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(안 제17조 내지 제23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5조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- 안 제6조·안 제7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, 관리, 주차요금 등을 규정하고, 안 제17조 내지 안 제23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및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레저·스포츠와 더불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전거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고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